

「신진디자이너 제조 온라인 생태계 조성사업」 전문용역

과업협상서



(재)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이근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김진환

「신진디자이너 제조 온라인 생태계 조성사업」 전문용역

I 사업소개

I 협상개요

가. 사업명 : 「신진 디자이너 제조 온라인 생태계 조성」 전문 용역

나. 사업목적 : 신진디자이너 상품 마케팅과정을 온라인으로 옮겨 상품제작부터 판매물 입점까지 전 과정을 프로세스화해 시장진입을 유도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7년 12월 31일(일요일)까지

라. 협상금액 : 일금일억구천오백만원(195,000,000원 VAT 포함)

마. 사업자 선정 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바. 추진경과

- 공고기간 : 2017. 5. 30.(화) ~ 6. 18.(일)

- 접수일 : 2017. 6. 19.(월) 11:00 ~ 16:00 / 4개 기업 제안서 접수

- 심사평가: 2017. 6. 22(목) 14:00~18:00

사. 협상대상자 :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 우선 협상 진행

협상순위	접수번호	대표사	공동이행
1순위	2017 - 나 - 04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소름
2순위	2017 - 나 - 03	DYAUS	DYAUS, 주식회사 세이프웨이즈코리아
3순위	2017 - 나 - 02	(주)피에프아이엔	단독
4순위	2017 - 나 - 01	주식회사 디쓰리디	D3D, 주식회사 크레이드인터내셔널, 한국패션봉제아카데미

아. 주요 사업내용 및 범위

1) 온라인 콘텐츠 지원

구분	주요내용
신진디자이너 온라인 콘텐츠 제작지원	. 모집 공고 및 심사를 통해 우수 신진디자이너 20여 명 선정 . G밸리 패션 지원센터 DDP 드림랩 등 재단 보유시설 최대한 연계 해

	<p>콘텐츠 제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진디자이너 컨셉별 스튜디오 촬영 및 콘텐츠 제작과정 지원 · 기 구축된 디자인 제조사이트 연계로 온라인 생태계 확대
<p>신진디자이너의 우수 디자인 봉제업체와 연계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션디자인은 있으나 샘플비나 마켓 경험이 없는 신진디자이너의 상품디자인을 우수봉제업체와 연계 · 디자이너+봉제업체가 연계된 상품은 우수상품 기획전에 전시 및 판매

2) 온라인 마케팅 지원

구분	주요내용
<p>우수상품 온라인 마켓 입점 및 연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작 콘텐츠 유통 경로 확대 지원 · 시즌 상품 온라인 룩북 제작 및 온라인마켓 상품 등록 가이드
<p>신진디자이너 제조 온라인 마케팅과정 매뉴얼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해 상품기획부터 상품입점까지 전 과정을 매뉴얼화 해 추후 창업가이드로 활용

II 추진 경과

가. 제안서 평가 심사

- 1) 일 시 : 2017. 6. 22(목) 14:00 ~ 18:00
- 2) 장 소 : 유어스빌딩(DDP패션몰) 4층 서울디자인재단 회의실
- 3) 평가위원 : 7명 (※ 분야별 전문가)
- 4) 평가결과 : 4개 업체(종합 점수가 70점 이상)

구분	배점	제안업체			
		나-01	나-02	나-03	나-04
객관적평가	20	12.34	14.90	14.78	14.65
주관적평가	70	58.3	58.7	60.2	66
가격평가	10	10	9.8	9.76	9.74
합계	100점	80.64	83.4	84.74	90.39
평가결과	협상순위	4순위	3순위	2순위	1순위
입찰금액	-	190,000천원	193,900천원	194,530천원	195,000천원

나. 제안서 평가심사 주요 의견

- 김윤태 : 이 프로젝트를 가장 잘 이해하는 업체가 선정되는 것이 필요하며 온라인 수출 쪽은 많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세계적인 기업들에 소셜이나 스타마케팅 같은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제시해줬으면 함
- 박해영 : 오프라인 중심으로 신진디자이너 생태계 조성사업을 진행한 경험한 시행착오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생태계 흐름이 온라인 쪽으로 변화하는데 체계성을 갖고 했으면 함
- 차희철 : 온라인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 지 등에 대한 시나리오가 나타나 있어야하며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만들어 메뉴얼화해 후임 디자이너들의 가이드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곽현주 : 예산에서 제일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할 것. 신진디자이너들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 지원하고 이를 백서화 하는 게 필요
- 나현신, 유재원 : 프로젝트를 잘 이해하는 업체가 되어야 하며, 특정 사이트나 특정기업보다는 타당성을 확보해 신진디자이너의 대표적 창업 및 마케팅 가이드가 되었으면 함
- 홍승완 : 국내에서 먼저 기반을 닦고 해외로 나가는 것이 순서일 듯 고려 필요

다. 협상 내용

1) 협상일시 및 주요 내용

구분	1차(6.28)	2차(7.4)
참석자	재단: 신미선 책임 한성대 산학협력단: 김복희 부단장, 남은진 팀장	좌동
장소	재단 4층 회의실(유어스)	좌동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위원 의견서 공유 및 제안서 수정 요청 ○ 서울디자인재단과 연계 강화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성대 산학협력단 의견 제출 ○ 협의내용 청취 및 협의 완료 ○ 신진디자이너 수혜대상자 모집 및 혜택 방향 협의 완료

III

협상결과

I

협의 사항

가. 평가의견 및 사업 추가 반영 내용

평가 위원	평가의견	사업 제안서 반영 내용 및 추가 내용	비고
김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 이해가 높은 업체 선정 중요성 ○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의 소셜 마케팅이나 스타마케팅의 중요성 언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은 사업 1차년도로 「신진디자이너 제조 온라인 생태계 조성」 기반을 다지는 단계로 국내 유통 연계에 충실하고, 글로벌 유통 연계는 2단계와 3단계 사업에 본격적으로 추진 예정 ○ 향후 2단계 사업 가능 시 글로벌 기업의 소셜 마케팅 연계를 해외 수출전략 추진에 포함 예정 ○ 2017년 올해 사업에는 국내 유명 종합유통에 연계되어 있는 글로벌관 입점 추진 제시 	사업 제안서 pp.40-41
박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프라인 중심의 신진디자이너 생태계 조성 사업의 시행착오를 반영하여 온라인 생태계 조성을 체계적으로 수행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진디자이너와 제조기업을 네트워크하여 지원한 6년간 RIS사업 성과를 분석하여, 수혜기업의 단순한 지원에서 벗어나 매출 및 고용 등의 성과까지 관리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 전략 구축 및 체계화 추진 ○ 신진디자이너들이 지속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온라인 생태계 조성 매뉴얼 제시 	
차희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진디자이너 창업 가이드를 위한 매뉴얼 제작의 중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로 신진디자이너와 OBM 제조기업이 패션시장에 신규로 진입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중심의 창업 가이드 매뉴얼 북 제작 ○ 상품 제작 일정에서 시작하여 온라인 콘텐츠 제작, 유통 연계, SNS를 활용한 마케팅까지 매뉴얼 제작 	사업 제안서 pp.37-39

곽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혜기업 수요조사에 예산 지원의 중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진디자이너 육성을 위한 맞춤형 사업화 전략 및 그룹별 차등지원 시스템 제시 사업 예산중 수혜기업 직접지원비 106,000천원 (54.4%) 수혜기업 선정 후 수요조사 실시 예정. 분석결과를 반영한 수혜디자이너 그룹별 차등지원 전략 추진 	사업 제안서 pp.24-25
나현신 유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젝트 이해가 높은 업체 선정 중요성 특정 사이트나 기업보다는 타당성 확보를 위해 신진디자이너 창업 가이드와 마케팅 가이드 제안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성대학교 SoulFN 센터의 경우 패션산업의 신성장 동력인 신진디자이너와 기반이 되는 제조 기업을 지원 육성할 수 있는 방안 및 정책을 지속적으로 연구 패션시장 현황과 신진디자이너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밀레니얼 세대에 맞는 온라인 생태계 조성연구와 매뉴얼 제작으로 청년 창업 확대와 청년 실업 해소 기여 	사업 제안서 pp.1-39
홍승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기반 확보 후 해외 판로 구축 순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사업은 사업 1차년도로 「신진디자이너 제조 온라인 생태계 조성」 기반을 다지는 단계임. 국내 유통 연계에 충실하고, 글로벌 유통 연계는 2단계와 3단계 사업에 본격적으로 추진 제시 	사업 제안서 pp.40-41

나. 서울디자인재단과 사업추진 협의 사항

구분	디자인 재단 요청 사항	사업 제안서 반영 내용
온라인 생태계 조성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진 디자이너 온라인 생태계 조성 사업의 체계적인 프로세스 구축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신진디자이너들이 지속적으로 추가 진입 할 수 있는 온라인 생태계 조성 매뉴얼북 작성 예정 서울디자인 재단 보유 시설 현황 및 활용 방안 제안으로 신진디자이너 비용절감 및 보유시설의 효과적인 활용안 제시(서울디자인재단의 정보 및 자료 제공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진디자이너 제조기업 온라인생태계 조성사업 홍보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 구축 언론홍보 네트워크 적극 활용한 언론홍보 SNS 채널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 전개 예정(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한성대학교, SoulFN 및 서울쇼룸이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및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디자인재단과 제조기업과의 긍정적인 관계 구축 희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메이커스' 등 제조기업 DB플랫폼 연계로 신진디자이너 및 제조기업 상호성장 가능한 온라인 생태계 조성을 선도 제조기업 연계 성공 사례를 홍보기사화하여 배포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 기대

서울디자인재단 사업 연계 및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디자인재단 프로그램연계 : 창작스튜디오 신진디자이너 육성, DDP 드림랩 Young Makers 양성 프로그램 外 ○ 서울디자인재단 보유시설 연계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디자인, 한성대학교 SoulFN 및 서울쇼룸이 상호협조하여 사업단계 별 홍보 추진 ○ 서울디자인 재단 자료 및 정보 제공, 매뉴얼북 제작 시 각 단계별 보유시설 소개 및 활용안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BM 육성을 위한 방안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년간 신진디자이너·제조기업 네트워킹 사업으로 다수의 봉제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보유 ○ 제조기업과 디자이너간의 협업사업 추진 등 다양한 네트워킹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추진 예정

다. 신진디자이너 선정 및 지원 협의

- 모집명 : 신진 디자이너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 지원
- 모집 대상 : 20명의 신진디자이너
 - 5년 이내 성장가능 신진디자이너(14명), 신규 스타트업 디자이너(6명)
- 모집규모 및 지원 자격

구 분	[1그룹] 성장가능 신진디자이너	[2그룹] 스타트업 디자이너
지원 대상 및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5년 이내 (※사업자등록 주소지는 서울시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2년 이하 또는 창업 희망자 (※사업자등록 주소지는 서울시에 한함)
지원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패션의류(여성복, 남성복, 캐주얼 등) ○ 2순위 패션잡화(가방, 신발, 액세서리 등)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랜드 운영 역량(30%) ○ 브랜드 성장 가능성(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의 상품성(40%)

- 지원범위

구 분	[1그룹] 성장가능 신진 디자이너	[2그룹] 스타트업 디자이너
-----	--------------------	-----------------

지원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1회) : 신제품 촬영 및 온라인 룩북 제작 - 온라인 유통 연계 지원 : 디자이너 온라인 편집샵, 종합 온라인 쇼핑몰, 모바일 마켓몰 입점 지원 - 온라인 홍보 지원 : SNS,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 - 서울 디자인 재단 보유 시설 활용 및 유통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1회) : 신제품 촬영 및 온라인 룩북 제작 - 시제품개발 및 양산을 위한 봉제 기업 연계 지원 - 온라인 유통 연계 지원 : 디자이너 온라인 편집샵, 종합 온라인 쇼핑몰, 모바일 마켓몰 입점 지원 - 서울 디자인 재단 보유 시설 활용 및 유통 연계
------	--	--

- 심사방법 : 서류심사(제출서류 참고)
- 평가방법 : 심사기준에 따른 내부, 외부 전문가 심사위원의 심사결과 고득점 디자이너 선출
- 평가기준

구 분	항 목	세부항목
평가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랜드운영 역량(30%) - 참가신청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정 및 적극성 - 유통전개 현황 및 매출 성장 - 실무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 구성 능력(40%) - 포토폴리오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랜드 컨셉 - 디자인의 독창성 - 아이템 구성능력 - 트렌드 수용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랜드 성장가능성(30%) - 사업계획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목표 및 비전 - 브랜드 경쟁력 - 가격의 합리성 - 브랜드 성장 가능성

II 과업 수행 시 준수사항

가. 과업 준수사항

구 분	내 용
홍 보	□ 신진디자이너 제조 온라인 생태계 조성사업 홍보 지원
협 력	□ 유관기관 협력 유치 및 활용계획 방안제시
안 전	□ 운영 기간 및 사업진행시 안전사고 대비 계획 및 운영 매뉴얼 정립
기 타	□ 기타 사업시행 후 만족도 조사 등 개선사항 도출해야 함

나. 사업수행 지침

□ 과업수행 지침

※ 본 과업지시서는 편의상 과업 지시자는 “발주기관”으로, 과업 수행자는 “계약상대자”로 칭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과업을 수행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추진 시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추진계획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의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및 기획 관련 논의한다.
-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과업 수행 시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른다. 다만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은 상호협의 조정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재단에게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 과업의 효력

- 이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약사항의 이행 완료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그 사건·사고와 관련하는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 양사 협의하에)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행사가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 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 ②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 ③ 재단의 정당한 요구 및 지시에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
 - ④ 계약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공정이 현저히 늦어질 때
 - ⑤ 과업수행과정 중 부주의로 중대한 과실이 발생할 때
 - ⑥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하도급하거나 중대한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 ⑦ 재단의 사전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 ⑧ 계약서에 명시한 용역수행기간 내에 과업 수행 계획에 의한 일정에 따라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용역수행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명백히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⑨ 당초 제안서 제출 시 업체 소개내용, 참여인력 경력, 사업실적 이행증명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음이 발견된 경우
 - ⑩ 본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상기 사항에 해당될 경우, 재단은 대행사에 대하여 일체의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함은 물론, 선지급분이 있을 경우 대행사는 이를 즉시 반환 조치하고 계약해지 조치가 진행되며, 재단은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용역업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착수보고 지침

□ 착수 보고 지침

- 착수보고 시 내용 구체화 및 교육 참가 협력·일정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한다.
- 사업추진 단계별 주요 발생업무를 구체화하고, 해당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단계별 인력투입 및 사업운영 계획을 제시한다.
- 기획, 사업 추진에 있어서 합리적인 예산운영 계획 수립
-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착수보고 시 업무분장 및 역할 명시

- 사업의 질적, 안정적 관리를 보완 및 통합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에듀케이터와 대표사(공동수급 시 협력사)의 역할 및 추진체계를 수립한다.
- 교육의 실행부분은 자체 전문 인력(조직)보유 또는 현지 전문 업체와 별도 컨소시엄 및 파트너십을 통해 교육수행의 전문성 확보 계획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 사업의 활성화와 취/창업을 위해 사업 수행 시 재단의 요청에 의한 디자이너 및 분야별 전문가 자문위원회 또는 간담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수행 환경

- ① 본 사업의 목표 및 전략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행한다.
- ② 본 사업은 서울의 의류제조산업의 전문인력 양성과 근로환경의 인식개선을 위해 추진한다.
- ③ 본 협약서 협약내용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발행할 경우 상호 협의하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진행한다.
- ④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제출 사항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사업추진에 있어 계약서, 협상서, 과업지시서 등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⑥ 본 사업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⑦ 인쇄 및 홍보 등은 관련규정 및 제반규정에 적합하게 제작 진행한다.
- ⑧ 각종 진행과정에서 전문가가 책임지고 추진하며, 작업 전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진행하고 작업 추진시 부주의로 인한 사고발생 시 책임당사자에게 있다.
- ⑨ 본 사업 제안과 관련한 자료(사진, 데이터, 그림 등)의 확보(촬영, 구매, 임대, 지급 등) 및 제안내용 등의 특허권, 저작권 등이 배타적 권리와 관련되었을 경우 위탁업체가 해결하며, 본 계약 수행 중에 계약 당사자 간에 발행사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라. 기타

- ① 본 협상서 및 과업지시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한다.
- ② 계약체결 후 전체 또는 부분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중간업무를 서울디자인재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보고,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서울디자인재단은 서울시와 함께 협력해 필요시 내용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행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상대상자는 서울디자인재단의 계약수행 과정에 계약이행 상황 등의 지도.감독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지적된 사항은 최단 시일 내에 성실히 보완하여야 한다.
- ⑤ 모든 저작권, 소유권은 발주처(서울디자인재단)에게 있다.

본 협상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반영될 내용으로 과업지시서에 명시한다.

2017.07.06



(재)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이 근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김진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아래 규정에 의해 「신진 디자이너 제조 온라인 생태계 조성」 전문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준용)
3. 서울시 정보화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을 위한 제안서 평가방법 세부기준 개선(정보화기획담당관-4194, 2009.3.11)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신진 디자이너 제조 온라인 생태계 조성」 전문 용역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 비율은 기술능력 평가90/100과 입찰가격 평가 10/100으로 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붙임 4]와 같다.
- ②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되며,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들이 한다.
- ③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지표(20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별표]의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정량적 지표의 세부 평가방법은 [붙임 5]와 같다.
- ④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점수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세부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은 [붙임 6]와 같다.

- ⑤ 입찰가격 평가(10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 평가(정성적 평가) 완료 후 지체 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밀봉한 가격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입찰가격 평가산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별표1] 규정에 의거 [붙임 기과 같다.
- ⑥ 제안서 평가 시 각 평가분야(항목)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점수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대비 등의 계산값을 평가등급 등의 구간(이상.미만 등)에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로 산정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 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②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 ③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 ① 제5조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 가격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체결 및 이행)

- ①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3조 (평가결과 공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점수는 공개한다.